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 10. 11 선고 2023가단21135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일부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회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5. 25. C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2022. 5. 26. 100,000,000원, 2022. 6. 20. 85,00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 투자금액 : 200,000,000원
- 투자금 상환 : 2022. 9. 30.
- 투자금 배당 : 2022. 10.부터 6개월간
- 배당금액 : 매월 15,000,000원 지급함

나. C의 딸인 피고는 2022. 7. 15. E로부터 경북 예천군 F 대 272㎡ 및 지상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주택 56㎡(이하 위 토지와 지상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50,000,000원에 매수하되, 2022. 7. 15. 계약금 15,000,000원, 2022. 9. 15. 중도금 75,000,000원, 2022. 10. 28.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C는 자신 명의 계좌를 통하여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각 매매대금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2022. 10.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2023. 1.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상환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C는 원고에 대하여 200,000,000원 상당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C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C를 대위한 원고에게 C로부터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지급 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중 일부인 3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8291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거주지 및 사업장이 있던 경북 예천에 소재한 부동산으로서 C가 사용할 예정이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매매대금이 C 명의

통장에서 매도인에게 지급된 사실, 피고가 C에게 송금한 돈이 바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인출되지는 아니하였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계약명의신탁 약정 체결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 하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계약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주된 기준은, 명의수탁자이자 계약상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는지, 아니면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돈을 C에게 지급하였다. 특히, 피고가 C에게 지급한 돈이 실질적으로 C로부터 나온 돈이라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가 제3자로부터 대출받은 돈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C에게 지급한 돈이 바로 매도인에게 송금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아닌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G) - C	C - E
-----------	-------

2022. 7. 4.	10,000,000	2022. 7. 1.	15,000,000
2022. 7. 6.	90,000,000	2022. 8. 19.	35,000,000
2022. 8. 31.	20,000,000	2022. 9. 15.	40,000,000
2022. 8. 31.	30,000,000	2022. 10. 27.	50,000,000
2022. 10. 27.	50,000,000	2022. 12. 30.	10,000,000

2) 피고와 C가 부녀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C의 필요에 의하여 매수하여야 할 부동산을 피고가 매수하여 C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 보기 어렵다.

3)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이용현황 등에 관하여 알려주었고,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서 작성 직후 이를 피고에게 송부하여 주었으며, 피고가 등기이전에 필요한 비용도

모두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새미